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22

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이달희

김기현 • 이종배 • 김승수

고동진 • 김성원 • 김소희

우재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 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, 휴업·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 톤에 달하고 있어,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 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·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 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68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40조제13항에 따른 지도·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	제40조(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
치폐기물 처리) ① ~ 12 (생	치폐기물 처리) ① ~ ⑫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	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
	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
	<u>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</u>
	인정하면 제17조의2제1항에 따
	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
	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
	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
	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
	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
	점검하게 할 수 있다.
제68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68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의2. 제40조제13항에 따른 지</u>
	<u>도·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</u>
	<u>기피한 자</u>

11.	\sim	12의4.	(생	럌)
тт.		14	\ O	-

③・④ (생 략)

11. ~ 12의4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